



제249회 임시회  
2006. 4.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□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4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7일

□ 제안 이유

○ 충청북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 내용

- 센터는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교육, 연구·조사,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(안 제3조)
-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음(안 제4조)
-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(안 제4조)
- 센터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,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운영함(안 제5조)

- 수탁자는 센터 운영·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(안 제6조)
-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함(안 제8조)
  - 다목적실 5~10만원, 기타시설은 운영규정에 의한 실비
- 센터 운영비는 이용료, 수탁자부담금, 기타수입금으로 충당 하되,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(안 제9조)

## □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,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국 최초로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, 타당 하다고 사료됨.
- 주요내용은 센터의 위치 및 기능, 운영·관리의 위탁, 운영위원회 구성, 수탁자의 의무, 이용료의 징수, 운영비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4조(운영·관리의 위탁)에 “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다.” 고 규정하고 있어, 개관시 수탁자가 없어 직영 할 경우 따른 조직구성, 소요재원 조달방법과 위탁 운영시 소요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〈참고자료〉

유사기관 운영비 지원내역

<2006년도 예산액>

기관명	인원	규모	운영비 보조금액	비 고
충북여성발전센터	12	926평	12억 9천만원	지하1, 지상3층, 별관
청주시여성발전문화센터	16	2,300평	12억 2천만원	지하1, 지상3층
청주시시립정보도서관	19	1,624평	18억 2천만원	지하1, 지상3층

- 안 제8조(이용료의 징수등)의 별표에 “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2시간의 기준으로 평일(50,000원), 토.일.공휴일(100,000원)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수 있다”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료의 산정기준과,
- 안 제9조(운영비 보조)에 “센터 운영비는 이용료, 수탁자부담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” 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 수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